ESG 동향

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검토

정 유 진 선임연구원 (yjjung@cgs.or.kr)

- ▶ 매년 정기주주총회 시즌마다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독립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,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독립성을 살펴보고 제도적 실효성을 검토해보고자 함
- ▶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, 사추위를 설치한 95사 중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회사는 16사(17%)에 불과하고 대표이사가 참여하는 회사가 58사(61%)에 이르러 경영진으로 부터의 독립성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함
- ▶ 더욱이 12사는 지배주주가 대표이사 겸 사추위 위원으로 있어 지배주주가 이사회 전체를 장악한 상황임
- ▶ 이러한 현상은 지배주주가 간접 지배하는 회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어, 경영진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따르는 위험이 일반 주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고 주주이익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됨
- ▶ 향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

검토 배경

- □ 사외이사는 전체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, 이를 위해 서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¹)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
 -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외이사 상당수가 단순 거수기 역할에 그쳐, 단순 사외이사 비중 증대가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매년 제기됨
 - 경제개혁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,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사외 이사 비중은 평균 47%인데, 독립성이 의심되는 사외이사 비중이 23%에 이름²⁾
 -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2018년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에 따르면, 분석대상인 15,90건 (237사) 중 305건이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었고 반대 권고한 93건 중 77건(83%)이 독립성 우려로 인한 반대임³⁾

¹⁾ 분산형 소유구조에서는 경영진의 사익추구 행위를 통제하여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배구조의 핵심이라면, 집중형 소유구조 에서는 지배주주의 이해상충 문제를 최소화하여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지배주주의 핵심임

²⁾ 경제개혁연구소,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분석, 경제개혁리포트 2018-07호

- □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 후보추천 절차의 독립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사추위)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정함
 - 그러나 경영진이 사추위에 참여할 경우, 사외이사는 후보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고 그 결과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어려워져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한 기구에 그칠 수 있음
 - 기존 연구에서도 사추위 독립성이 이사회 사외이사 비율에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이사회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⁴⁾
 - 특히 지배주주가 그 구성원이 될 경우, 사외이사 후보추천 절차부터 선임에 이르기까지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고 일반주주의 보호가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함
- □ 이하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(금융사 제외⁵⁾)를 중심으로 사추위 독립성을 살펴보고 제도적 실효성을 검토해보고자 함
 - 시추위 내 경영진 및 지배주주이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, 지배주주가 직접 지배하는 상장회사와 가접 지배하는 상장회사를 구분하여 각각의 사추위 구성을 비교·분석함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현황

- 미 지난 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3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⁷⁾ 중 29개 기업집단의 비금융 상장계열사 174사의 사추위 설치현황을 살펴봄⁸⁾
 -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74사 중 95사(55%)가 사추위를 설치하였는데, 이중 78사는 설치의무가 있는 회사이고 17사는 자발적으로 설치한 회사임

〈표 1〉 시장 및 자산규모별 설치현황

(단위: 사)

구분	전체	시장		자산규모		
		유가	코스닥	2조 원 이상	2조 원 미만	
설치회사	95	91	4	78	17	
미설치회사	79	48	31	0	79	
합 계	174	139	35	78	96	

- $3) \ http://www.cgs.or.kr/news/press_view.jsp?pp=6\&skey=all\&svalue=\%EC\%9D\%98\%EC\%95\%88\&pg=1\&no=1418.$
- 4) 이상철, 정갑수, 이사회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특성에 대한 연구, 2013, 관리회계연구
- 5) 「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」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는 제외함
- 6) 동일인 및 친족을 의미함
- 7) 총 31개가 지정되었으나, 부영(상장회사 없음)과 한국투자금융(비금융 상장회사 없음)은 제외함
- 8) DART에 공시된 사업보고서(2017.12.31.기준), 주주총회소집공고,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지배구조 평가 데이터를 활용함

- 사추위 구성을 살펴보면,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한 회사는 16사(17%, 7개 기업집단)에 불과하고 대부분 과반수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법상 최소요건만 충족시킨 수준임
 - 3명 중 2명이 사외이사인 형태가 가장 많고 평균 사외이사 비율은 73%에 그침
 - 참고로 미국 NYSE 상장규칙(303A.04(a))은 전원 독립 이사(independent director)로 구성된 추천위원회(nomination committee)를 설치를 의무화함⁹⁾

〈표 2〉 위원회 규모별 사외이사 수

(단위: 사)

사외이사 전체	2명	3명	4명	5명		8명	계
3명	50	9	-	-		_	59
4명	과반수 미달	10	6	-		-	16
5명		11	3	1		_	15
6명		과반수 미달	1	1		-	2
8명			과반수 미달*	1		0	2*
9명				0		1	1

*2017년 중 사임하였으나 정관에 의거하여 다음 정기주주총회까지 최소 선임요건을 충족한 1사(4명/8명) 포함

○ 사추위 내 사내이사¹0)는 최대 4명¹¹)까지 소속되어있는데, 사내이사가 2명 이상인 회사는 모두 대표이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

아내이사 1명 (65시) 68% 32% 100%

[그림 1] 위원회 내 사내이사 구성

⁹⁾ 이외 독일, 체코, 슬로베니아는 전원 사외이사 구성을 권고함 (OECD Factbook, 2017)

¹⁰⁾ 사외이사 아닌 이사는 모두 사내이사로 분류함

¹¹⁾ 이사회 전원이 사추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사실상 이사회와 사추위 구성이 동일한 경우로 상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례임

- 대표이사가 사추위 위원인 회사는 58사(61%, 23개 기업집단)에 이르고 이중 사외이사가 위원장인 회사는 18사에 불과하여, 사추위 상당수가 독립성이 결여된 채 운영되고 있음
 - 개별 기업집단 수준에서는 최대 8개 소속계열사가 대표이사-참여형 사추위를 운영하고 있고, 사추위를 설치한 소속계열사 전체가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12개 기업집단에서 발견됨12)
 -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후보추천 절차에 관여하게 되면 어떤 후보자도 경영진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갖출 수 없게 되고 경영진의 사외이사 지배가 용이해져 문제가 됨
- 나아가 지배주주가 사추위 위원인 회사는 13사(14%, 9개 기업집단)이고 1사를 제외하고는 지배주주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사실상 지배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한 상황임
 - 국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참석률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, 지배주주의 영향력은 지나치게 커지고 일반 주주의 이익 보호는 취약해져 문제가 됨
- 나추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, 평균적으로 연간 1.5회 개최하고 주로 주주총회 직전에 후보자
 추천 안건을 결의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
 -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사추위는 사외이사 후보자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하는데 실제 사추위의 역할은 소극적인 수준에 그침¹³⁾
 - 사추위 독립성 문제와 결부시켜 볼 때 제도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

기업집단 내 소유구조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

- □ 이하에서는 기업집단 내 소유구조 정보를 추가하여 지배주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사추위 독립성 수준을 비교하여 살펴봄
 - 지배주주의 직접 지분율이 큰 회사(직접)간접)와 계열회사를 통한 간접 지분율이 큰 회사(간접) 직접)를 구분하여 편의상 전자는 ①직접 지배회사, 후자는 ②간접 지배회사로 칭함
 - 회사에 대한 지배주주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직접 지분율에 비례하는 것으로 봄
 - 지배주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낮고 의결권 수가 큰 회사(②간접 지배회사)일수록 i)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이 크고 ii)사외이사 후보추천 절차의 독립성 결여에 따른 위험부담 (=비용)이 일반 주주에게 전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함

¹²⁾ 단, 사추위 설치회사가 1개인 기업집단 8개, 2개인 기업집단 2개, 3개인 기업집단 2개로 사추위 설치회사 수가 적은 기업집단임 13) 이에 반해 금융회사의 사추위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원칙을 제·개정하고 실제 후보군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등 사추위가 적극적으로 운영됨

(단위: 사)

							(단위: 사)	
동일인				위원회 구성				
	, () ¬ ∓	전체	전원 사외이사 시		l내이사 참여		
	소구	우구조				대표이사 참여		
							지배주주	
개인	① 직접 > 간접		22	5	17	16	6	
	직접 지분율	>10%	1	0	1	1	0	
		>20%	16	3	13	13	5	
		>40%	5	2	3	2	1	
	② 간접 > 직접		65	10	55	38	6	
	직접 지분율	0%	26	5	21	12	2*	
		>0%	33	5	28	22	4	
		>10%	5	0	5	3	0	
		>20%	1	0	1	1	0	
	소 계		87	15	72	54	12	
법인	_		8	1	7**	4	-	
합 계		95	16	79	58	12		

^{*}지배주주가 기타비상무이사인 1사 제외

- 첫째, 사추위 설치회사의 2/3 이상이 ②간접 지배회사(65사)인 것으로 나타나, ②간접 지배 회사의 사추위 독립성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
- 둘째, 사추위 내 사내이사 참여회사 비율은 ②간접 지배회사(55사, 85%)가 ①직접 지배회사 (17사, 77%)보다 더 높음
 - 이중 대표이사 참여회사 비율은 ①직접 지배회사(16사, 73%)가 ②간접 지배회사(38사, 58%)보다 높았고,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인 경우도 동일하게 나타남
- 셋째, 지배주주는 ①직접 지배회사, ②간접 지배회사 여부에 상관없이 사추위에 참여하고 있고,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예 없는 회사(2사)에서도 대표이사 겸 사추위 위원으로 활동함
 -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적거나 아예 없는 회사에서 지배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할 경우,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상충이 극대화되고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가능성이 높아져 심각한 지배구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
 - 따라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행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
- 넷째, 동일인이 법인인 기업집단에서도 경영진의 사추위 진출이 이루어짐
 - 7사 중 1사만 전원 사외이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4사는 대표이사가 직접 참여하고 있어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

^{**}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는 1사 포함

- 회사 내 최고경영자승계원칙이 없거나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을 시, 동일인이 개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사회가 특정 집단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을 수 있어 문제가 됨

소결

- ㅁ 사실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형해화되어 제도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일반 주주의 이익보호가 취약한 상황임
 -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일반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함
 -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김종인 의원 대표발의안(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배제, 우리사주조합 추천 1인 포함)과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안(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배제)은 유사 내용을 담고 있음
 - 나아가 사추위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련된 내용을 투자자에게 공개하여 사외이사 추천 절차에 대한 주주의 신뢰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음
 - 사추위는 이사회 평가 등을 통해 기존 이사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고 후보자의 독립성, 전문성, 자격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